「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 06. 09 (수)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0. 06.21 (월)

다. 상정일자 : 2010. 06.21 (월)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가. 군민들에게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 7조)

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혁영)

가. 본 조례안은 평창읍 평창중앙로 67에 위치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보면,

강당,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 제시와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다. 본 문화복지센터는 노인회 군지회,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사무실, 요리강습실, 요가·스포츠실, 체력증진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의 종합 문화복지센터로 시설됨.

라. 2010. 1. 28일 개관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설물의 운영관리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강당, 세미나실 등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마. 또한, 조례안 제12조에서 시설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시설물의 사용료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이를 준용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이어야 함. 대규모 시설물이며, 다양한 사회단체 입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특정법인단체가 위탁관리 하기가 쉽지 않으나, 향후 위탁요율에 대한 명시와 현실적인 방안강구가 필요한 사항임.

바.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야간 및 휴일에는 별도의 인력배치 없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출입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음주자, 정신이상자 등 출입시 시설물 및 근무자에 대한 방호 대책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의 관리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기본적인 시설 운영비 이외에 취사시 가스료 등은 개별 단체에 비용을 부담하여야 형평성 유지됨.	○ 1년정도 운영 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 노인회 등 입주 단체에서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부분은 개선바람.	○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 관리직원에 대한 처우 및 시설 방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